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나경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49 발의연월일 : 2025. 2. 26.

발 의 자: 나경원 · 김성원 · 고동진

김선교 · 송언석 · 성일종

송석준 • 서천호 • 박준태

서지영 · 곽규택 · 이종배

구자근 • 박충권 • 조경태

백종헌 • 박수영 • 서일준

신성범 · 김미애 · 박덕흠

김민전 · 김장겸 · 김희정

조배숙 · 정성국 · 인요한

임이자 · 김종양 · 임종득

조승환 • 이헌승 • 이만희

조은희 · 최보윤 · 윤상현

의원(3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,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.

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「국가재정

법」 등에 따라 5년으로,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.

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,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·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,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. 이를 통하여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44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제1항 전단 중 "제15조"를 "제14조의2, 제15조"로, "제48조부터 제50조까지"를 "제48조, 제49조, 제49조의2, 제50조"로, "제278조, 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79조"를 "제278조부터 제280조까지"로 한다.

제2조(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	제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
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	①
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	
는 「공직선거법」 제3조부터	
제8조까지, 제8조의2부터 제8조	
의4까지, 제8조의6, 제9조, 제10	
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1	
조, 제12조, 제14조, <u>제15조</u> , 제	<u>체14</u>
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30조부	조의2, 제15조
터 제46조까지, <u>제48조부터 제5</u>	
<u>0조까지</u> , 제52조, 제54조부터	제48조, 제49조, 제49조의2,
제57조까지, 제58조부터 제60조	<u>제50조</u>
까지,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	
까지, 제61조, 제62조부터 제74	
조까지, 제79조부터 제82조까	
지, 제82조의2, 제82조의4부터	
제82조의7까지, 제85조, 제86조	
(제2항제2호 단서·제3호 및	
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), 제87	
조부터 제108조까지, 제108조의	
2,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,	
제122조의2, 제135조(제1항 단	
서는 제외한다), 제135조의2,	

제146조, 제146조의2, 제147조 부터 제149조까지, 제149조의2,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, 제16 1조부터 제166조까지, 제166조 의2,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,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, 제21 1조부터 제217조까지, 제219조 부터 제262조까지, 제262조의2, 제262조의3, 제263조부터 제265 조까지, 제265조의2, 제266조부 터 제270조까지, 제270조의2, 제271조, 제271조의2, 제272조, 제272조의2, 제272조의3, 제273 조부터 제277조까지, 제277조의 2, 제278조, 제279조 중 시 · 도 지사 및 시·도지사선거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78조부				
터 제280조까지				
<u></u>				
•				
②·③ (현행과 같음)				

②・③ (생 략)